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 가 정 보 화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①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산실

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시설

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3. 공조시설

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4. 비상발전시설

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규모) ① 대통령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과 영 제34조제1항제2호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접수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

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7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유·무선 정보통신 개발, 컨설팅, 교육 등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업무에 필요한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은 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1. 영 제40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2. 별표 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별표 3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설비 및 환경 심사
3.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별표 4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사(이하 ‘업무수행능력심사’라 한다.)
4.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 결정
5.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되는 업무

②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등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① 법 제47조제2

항에 따라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영 제3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의 경우 적정 수준을 갖추었다고 본다.

제10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영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1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3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영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무선 정보통신의 특성상 인증신청인이 신청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범위만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침에 따라 인증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심사,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면심사를 통과한 경우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로 구성된 기술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가심사의 경우 영 제36조에 따라 심사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신청인"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사용자심사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평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변경) ① 법 제47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에서 중대한 변경(사이트 개편, 주요 서비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자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 표준지침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영 제41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에 한번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 결과 접근성 수준이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은 취득한 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한다.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즈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및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등) ① 영 제50조제7항에 따라 교육대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연도 예방교육 이수기준 미충족
2. 당해 연도 예방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3. 당해 연도 예방교육 실시 결과 허위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기관별 예방교육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원장 또는 원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④ 관리자는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관리자는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관리자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 특별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특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관련 정책 및 법제도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기관 및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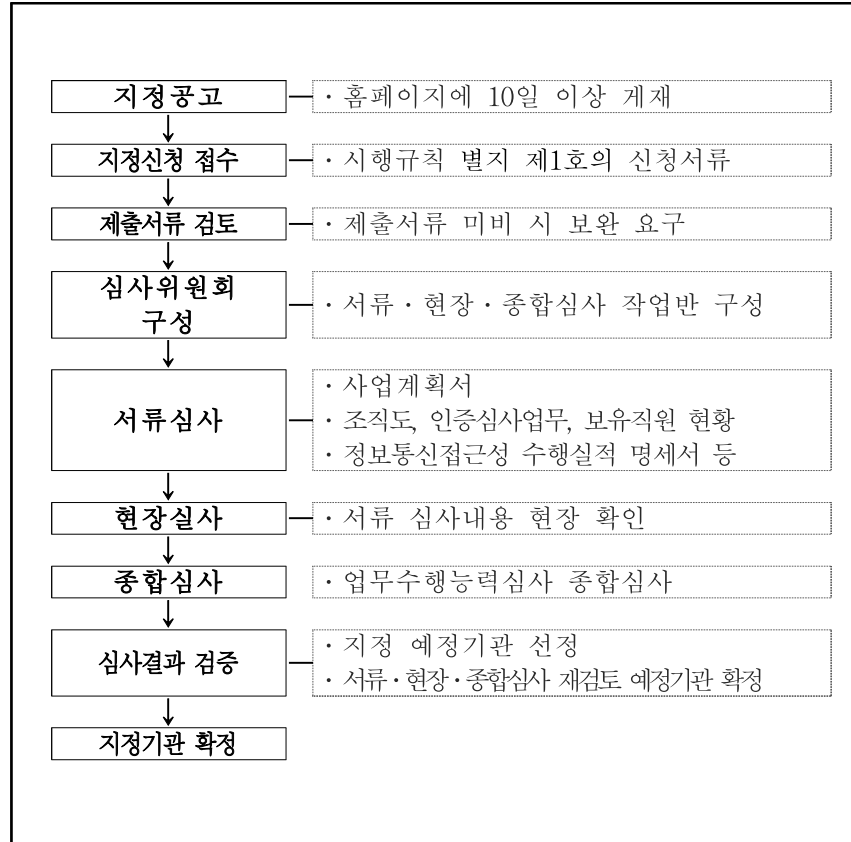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제5조 관련)



[별표 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세부기준(제6조 관련)

구분	기술 등급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자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
인증 심사원	전문가 심사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사용자 심사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3년제 전문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성 교육기관의 사용자 정보통신접근성 전

		대학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문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또는 500시간 이상 이수한자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	---	---

비고 : 경력은 학위·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관련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환경 및 조건 기준(제6조 관련)

1. 설비 관련 기준

- 가.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가 가능한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 나. 온라인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을 보유

2. 운영 관련 기준

- 가. 전문가심사원 3인 이상 상주인력 보유
- 나. 사용자심사원 3인 이상 상주인력 보유
 - 1) 시각장애인 각 1인(전맹, 저시력)
 - 2) 지체(상지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1인

[별표 4]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심사기준(제9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1. 서류 심사 (적/부)	가.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여부	적합/부적합		
	나. 조직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의 보유여부	적합/부적합		
	다. 인력	•전문가심사원 3인 이상 및 장애인 사용자심사원 3인 이상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상주인력 보유	적합/부적합		
	라. 설비	•인증 관련 상담 서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관련 장비 보유 여부	적합/부적합		
2. 제안서 평가 (60점)	가. 사업계획서 (30점)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5		
		•사업수행 목표, 전략, 범위 및 절차의 적절성	5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성	5		
		•사업 지원 및 관리계획의 충실성	5		
		•심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5		
		•심사인력의 교육이수 및 경험 수준	5		
	나. 인증업무 수행규정 (30점)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규정	3		
		•인증업무절차에 관한 규정	3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	3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3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규정	3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보안관리 규정	3		
		•인증심사원의 교육계획	3		
		•인증 품질관리 규정	3		
		•사후관리 규정	3		
		•분쟁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3		
		3. 발표평가 (40점)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심사수준평가 (40점)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내용에 관한 질의	10
				•인증심사 공정성 및 심사결과 대응에 관한 질의	10
•인증심사 사업계획 및 인증심사기관에 관한 질의	10				
•홍보 및 심사수수료 등 기타에 관한 질의	10				
4. 현장 심사 (적/부)	•사무공간 확보 여부 (심사업무수행 구역 확보 등) •상시 인증심사원 및 인력 확보 여부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확보 여부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관리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 (제1조~제3호 관련)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 일치/불일치		
		합 계			

※ 서류심사에서 적합일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점수는 제안서 평가(60점)와 발표평가(40점)를 합산으로 한다.

[별표 5]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준(제10조 관련)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무선정보통신(웹사이트)의 접근성에 관한 품질인증
심사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3)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
야 한다.

5)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6)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
어야 한다.

3)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초당 3~5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7)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 1)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2)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3)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4)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5)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6)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라. 견고성

- 1)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무선정보통신(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에 관한 품질인증심사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2)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4)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5)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 1)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 2)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3)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4)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5)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 1)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4)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5)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견고성

- 1)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6]

사용자평가 심사기준(제12조 관련)

1. 사용자 심사기준

- 10개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 각 과업당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모두 성공하면 통과한 것으로 본다.

과업 성공률 산정 방식

$$\frac{\text{성공한과업}}{\text{심사대상과업}} \times 100$$

3명의 사용자심사원이 각 과업별로 15분 이내에 성공

[별표 7]

인증심사원 직무 교육(제15조 관련)

1. 교육내용

- 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 나. 정보통신접근성 지침 및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
- 다. 품질인증 심사 실무
-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 교육 실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별표 8]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교육대상	교육 이수기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당해 연도에 아래 ‘가, 나, 다, 라’의 방법으로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육인원을 합산하였을 때, 이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 \text{이수율}(\%) = (\text{교육참여인원} / \text{교육대상인원}) \times 100$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아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학교	학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직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학생	당해 연도에 아래 ‘가, 나, 다, 라’의 방법으로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육인원을 합산하였을 때, 이수율*이 50% 이상인 경우 $* \text{이수율}(\%) = (\text{교육참여인원} / \text{교육대상인원}) \times 10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품질인증 업무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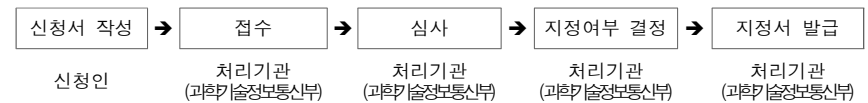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품질인증업무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영 제36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품질인증업무 수행규정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유·무선 정보통신 개발, 컨설팅, 교육 등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
6. 품질인증업무의 종류 :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갱신 30일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성 명	부 서	직 위
	책 임 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개발(운영)업체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 청 품 목	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		
		[] 갱신	기존 인증 유효기간(00.00.00~00.00.00)	
	품질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인증기관)	→ 협의 처리기관 (인증기관)	→ 인증심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인증품목(웹사이트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앞쪽)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60일

지원사업 분야	
과제명	

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개발책임자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총 연구기간	. . ~ . . (개월)	
해당 연도	. . ~ . . (개월)	
연구기간		
참여인력(M/Y)	총 : 명(M/Y)	해당 연도: 명(M/Y)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관명	개발책임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이메일:	
위탁사업자			전화:	
			이메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하려는 자에 한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작성	지원계획 공고
	접수
	심사
심사결과 통지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